

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환경친화적  
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2 월 6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2158호

붙임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80”으로 한다.

제8조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, 제11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8조,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충전료 징수) ① 시장은 여수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.

제9조(충전시설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시설을 관리·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·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, 관리책임, 위탁 취소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.

제12조(준용)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제7조(충전시설 보급확대)</b> ① (생 략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③ (생 략) <신 설>	<b>제7조(충전시설 보급확대)</b>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00분의 80----- --.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b>제8조(충전료 징수)</b> ① 시장은 여수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.
<b>제8조·제9조 (생 략)</b> <신 설>	<b>제9조(충전시설 운영의 위탁)</b>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시설을 관리·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·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, 관리책임, 위탁 취소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.
<b>제10조 (생 략)</b>	제10조·제11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 <b>제12조(준용)</b>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	제13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